

#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1.12.1.  
행정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(2011년 12월 1일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정호

### 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,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우리구청 주소(소재지)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(1) 안 제1조(목적)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6조제1항에 따라”로 법률용어를 순화

(2) 안 제2조에서는 “난지도길 30”을 “월드컵로 212”으로 변경

(3) 부칙에서는 “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” 로  
시행일 규정

### **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**

동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6조(사무소의 소재지) 및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1조제3호(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)에 따라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제1항, 제2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구청의 기존주소를 새로운 주소로 변경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,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**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**

**8. 기타사항 : 없음**